

네트워크 장비류 계약 요청서

2026. 1

금 강 대 학 교

I. 사업개요

1. 사업명 : 금강대학교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 유지보수 용역
2. 추진목적 : 금강대학교의 전산정보자원인 네트워크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대하여 금강대학교와 유지보수 업체 간의 유지보수 조건 및 지원 사항에 있어 이행되어야 하는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, 네트워크장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, 기 발생된 장애에 대하여는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신속.정확하게 복구함으로써 전산장비 활용에 대한 최적의 환경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3. 사업내용 : 금강대학교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예방정비, 장애복구 지원 및 H/W.S/W의 추가.변경 구성시 기술지원 등
4. 용역기간 : 2026. 3. 1~ 2027. 2. 28까지(12개월)

II. 제안요청 사항

가. 유지보수 수행기준

- 유지보수는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H/W, S/W 유지보수는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.
- 서비스하고 있는 각종 네트워크 시스템의 이상(버그), 에러 발생 시 즉각 해결조치하고 금강대학교 담당자 및 전산 인프라 유지보수 수행업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장애발생과 별도로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사전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,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환경설정, 가동상태 등을 함께 점검 실시하여 상시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네트워크 시스템 동작 또는 보안에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알려진 버그에 대한 패치는 무상으로 즉시 적용하여야 한다.
- 네트워크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네트워크 시스템의 재구성 등 금강대

학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지원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.

- 네트워크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최적상태를 유지하고 기록 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금강대학교에 인력을 파견하여 본 사업에 관련된 장비 및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정기예방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월간 정비이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또한 네트워크 시스템의 원활한 유지를 위하여 연계시스템(각종 운영소프트웨어 등)에 대한 실무담당자의 기술지원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.
- 네트워크 시스템 장애발생 시 장애통보를 받은 후 4시간 이내에 수리를 완료하여 정상 가동토록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, 금강대학교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 신속하게 장애복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보안과 관련되어 주기적인 패턴 등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새로운 패턴 등을 자동으로 업데이트 하여야 하며, 상황에 따라 수시 업데이트도 병행 되어야 한다.

나. 계약기간 및 대가의 지급

- 계약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(12개월)로 유지보수 기간을 정한다.
- 다음 연도 유지보수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계약서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동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마지막 달의 계약조건을 적용한다.
- 유지보수 대가의 지급은 매월 정비이행 보고서를 검토 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유지보수 수행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보수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한다.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유지보수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한다.
-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신규 유지보수업체에게 1개월 이내에 업무 인계를 완료한다.

다. 유지보수 조건

- 계약자는 네트워크시스템 전체구성에 대한 장비.업무.보안 등 시설을 파악하여, 기 운영중인 네트워크시스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경미한 신.증설 및 이전설치 등은 작업지시서 또는 구두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.
-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시 업무담당자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.

-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수관리를 위하여 고장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.관리하여야 한다.
- 모든 작업내용 및 처리사항 등은 금강대학교와 협의하여 제안서에 제안된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상황종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.
- 각종 장비의 장애 및 고장 발생 시 지체 없이 보고 후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.
- 계약자는 네트워크시스템의 운영중단, 업무수행 등을 위하여 금강대학교가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도 이에 응해야 한다.
-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부속품 교체 시 교체부품은 성능상 동질 또는 그 이상의 부품으로 하며,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등기기 이상으로 임시 대체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.
- 계약자는 월 2회 이상 동일 장비의 장애발생 시 또는 금강대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장비에 대한 대체 장비를 금강대학교의 지정장소에 두어 네트워크장비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단 장애요인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장비를 철수할 수 있다.
- 네트워크시스템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네트워크시스템을 재구성할 경우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적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.

라. 유지보수 장비 현황

순번	품명	규격	수량	구입년도	비고
1	라우터 (ASR1001-X)	Cisco ASR1001-X Chassis, 6 built-in GE, Dual P/S, 8GB DRAM	1	2017년	
		SNTC-8X5XNBD Cisco ASR1001-X Chassis, Crypto, 6 built	1		
		Cisco ASR 1000 Advanced Enterprise Services License	1		
		SNTC-8X5XNBD Cisco ASR 1000 Advanced Enterprise Ser	1		
2	L3 Switch (Catalyst 9407R)	Cisco Catalyst 9400 Series 7 slot chassis	1	2020년	
		Cisco Catalyst 9400 Series 3200W AC Power Supply	2		
		Cisco Catalyst 9400 Series Supervisor 1 Module	1		
		Cisco Catalyst 9400 Series Redundant Supervisor 1 Module	1		
		Cisco Catalyst 9400 Series 48-Port 10/100/1000 (RJ-45)	2		
		Cisco Catalyst 9400 Series 24-Port 10 Gigabit Ethernet(SFP+)	1		
3	L3 Switch (WS-4510)	Catalyst 4500 Chassis (10-Slot),fan, no p/s,Red Sup Capable	1	2007년	
		Catalyst 4500 2800W AC Power Supply (Data and PoE)	1		
		Catalyst 4500 2800W AC Power Supply (Data and PoE)	1		
		Catalyst 4500 Supervisor V (2GE), Console(RJ-45)	1		

		Catalyst 4500 NetFlow Services Card (Sup IV/V)	1		
		Catalyst 4500 GE Module, Server Switching 18-Ports (GBIC)	1		
		Catalyst 4500 24-port10/100/1000Module(RJ45)	1		
4	L2 Switch	Catalyst C2960-24TC-S	1	2007년	
		Catalyst C2960G-48TC-L	5		
		Catalyst C2960G-24TC-L	2		
		Catalyst C2960S-48TS-S	4	2011년	
		Catalyst C3750X-12S-S(Giga Wi-Fi)	1	2013년	
		Catalyst C3560X-24T-S(Giga Wi-Fi)	1		
		OS6860E-24	6	2022년	
		OS6860E-48	6		
		OS6860E-24(KT 장비)	3	2022.02	
		OS6560-24X4	1	2024.02	
5	PoE L2 Switch	Catalyst-C2960S-24PS-L(PoE24)	3	2013년	Wi-Fi 용
		Catalyst-C2960S-24PS-L(PoE24)	4	2016년	
		Catalyst-C2960S-24PS-L(PoE24)	4	2017년	
6	루커스 무선 AP 및 컨트롤러	ZoneDirector 3000_3050-ww00	1	2013년	
		ZoneDirector 3000_3050-ww00	1	2018년	
		ZoneFlex 7341-WW00	25	2013년	
		ZoneFlex R310	23	2016년	
		ZoneFlex R500	21	2018년	
		ZoneFlex 7762 OutDoor Wireless Accesspoint 7762-WW01	4	2013년	
		ZoneFlex T300 OutDoor Wireless Accesspoint	1	2016년	
7	무선 방화벽 (BLUEMAX NGF 500)	BLUEMAX NGF 500	1	2020년	
8	산학협력단 무선 AP 및 스위치	OS6450-P24	1	2022년	
		EAP245(US)	10	2022년	
총계	8품명	39종류	148		

III. 계약 특수 조건

제1조(적용범위) 본 계약특수조건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에 있어서 금강대학교(이하 “갑”이라 한다)와 계약상대자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사이에 적용 한다.

제2조(유지보수대상)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의 세부 내역은 "라. 유지보수 장비 현황"과

같다.

제3조(유지보수 범위) ①장비의 유지보수는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펌웨어를 비롯한 운영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는 계약당시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“을”은 대상 제2조의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각종 기술정보를 “갑”에게 제공하여야 하며, “갑”이 운영.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상담을 요청한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.

④본 계약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례를 따른다.

제4조(계약기간)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6.03.01부터 2027.02.28까지로 한다.

제5조(유지보수 시간) 유지보수를 실시하는 시간은 1일 24시간 계약기간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정기 종합점검) ①“갑”이 제2조의 유지보수대상 장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“을”은 월1회 종합점검 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종합점검은 매월 셋째주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, “갑”과 “을”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.

③“을”은 점검 결과를 “갑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시 유지보수) ①“을”은 “갑”으로부터의 장애 발생 통보.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.

②“을”은 장애 발생 후 4시간 이내에 장애 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.

③“갑”은 “을”의 유지정비요원이 신속한 유지정비를 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 출입이나 장비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.

④“을”은 “갑”의 수리 요청 시 신속한 유지정비를 위하여 항상 유지정비에 필요한 백업장비 및 수리도구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.

⑤“을”은 제2조의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S/W가 Version-up 또는 긴급 Patch 발생 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무상으로 Upgrade 또는 Patch 하여야 한다.

⑥"을"은 유지보수를 완료한 이후 2시간 이내에 장애발생 사유를 "갑"의 관련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정비점검 상황표) "을"은 정기 종합점검 및 수시 유지보수 작업 내용을 "갑"과 협의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"갑"으로부터 작업 내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.

제9조(월 유지보수료) ①"갑"이 "을"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유지보수료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.

②월 유지보수료에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 종합점검, 수시 유지보수 및 기술자 파견료 등 소요되는 인원 및 부품 사용료 일체가 포함된다.

③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정비 보수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.

제10조(월 유지보수료의 지급) "을"은 해당 월의 유지보수료를 제8조의 정비점검 상황표를 첨부하여 "갑"에게 청구하고 "갑"은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하며 청구일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.

제11조(지체상금) ①"을"이 제7조 제1항과 제2항의 시간을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매 지체시간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.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.

②"을"이 제7조 제1항과 제2항의 시간 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장애로 간주하여 제11조 제2항의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.

제12조(손해배상 책임) ①"을"은 제2조의 유지보수대상 장비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"을"이 유지보수 작업 시 부주의하여 제2조의 유지보수대상 장비를 파손하는 등으로 "갑"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"을"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.

제13조(계약의 해약, 변경) 본 계약은 계약기간 종료전이라 하더라도 "갑"의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"을"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보수가 곤란할 경우 또는 "을"의 태만으로 "갑"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계약의 해약, 변경이 필요한 경우 "갑"은 본 계약의 해약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14조(보안책임) ①“을”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“갑”으로부터 취득한 비밀사항을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
②“을”은 기계실 출입 시 “갑”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“갑”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“을”은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5조(하도급 금지) ①“을”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, 기술특성상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“갑”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“갑”의 사전승인을 받은 하도급업체는 제3의 업체에 재 하도급을 금지한다.

제16조(유지보수 계획서 제출) “을”은 유지보수계약체결 후 1주일 이내에 유지보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“갑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7조(기타 특기사항)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“갑”과 “을”이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. 단, “갑”과 “을”의 합의가 원활치 않을 경우 “갑”의 해석을 따른다.

제18조(계약의 우선순위)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그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고,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